

수원지방법원 2022. 7. 20 선고 2022가단5109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6. 15.

판 결 선 고 2022. 7. 2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1. 3. 4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각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. 3. 4. 접수 제34593호, 제345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’라 한다)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가 C에 대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2020. 4. 29. ‘C은 2020. 6. 30.까지 원고에게 45,000,000원을 지급하라’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(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7424호).

나. 대부업자인 피고는 2021. 2. 17. C에게 135,000,000원을 이자 연 24%로 대여하면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, 대여금 135,000,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등기말소상환금 124,369,220원, 법무사비용 2,471,950원, 체납 건강보험료 합계 6,721,460원을 대위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1,437,37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5호증,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 등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피고는 대부업자로, C에게 135,000,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말소상환금 124,369,220원, 법무사비용 2,471,950원, 체납 건강보험료 6,721,460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1,437,370원을 C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운

별지

부 동 산 목 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용인시 기흥구 D

[도로명주소] 용인시 기흥구 E

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

1층 내지 4층 각 101.36㎡

지1층 106.68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용인시 기흥구 D 대 572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층 F호 철근콘크리트조 40.53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572분의 71.5 끝.

